

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|--|
| 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|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 | 2016. 4. 7 (목) | |
| | | 작 성 문 의 |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신봉일 / 사무관 박정민 T. 044-200-1731 |
| <p>* 엠바고 : 4.6(수) 14시 이후 사용</p> | | | |

조세심판원, 「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」 확대 실시

-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액·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대리인 지원
 - 광주·대구·대전·부산 등 지역별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1명씩 추가 위촉
-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(원장 심화석)은 2015년 4월 6일 부터 1년간 시범실시한 「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」 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.
- 이에 따라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,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·영세 심판청구인들이 지원을 받는다.
 -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개인은 무료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,
 - 법인사업자, 상속세·증여세·종합부동산세·관세·지방세 심판청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.
- 조세심판원은 시범실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이외에 2016.4.6. 광주·대구·대전·부산 등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 4명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였다.

- 수도권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이외에 광주·전라권, 대구·경북권, 부산·경남·제주권, 대전·충청권 등 각 지역별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선임됨에 따라,
 - 전국의 소액·영세 심판청구인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앞으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안내장을 송부하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,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,
- 「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」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및 배포하는 등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

※ 붙임 : 「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」 개요

① 추진배경

-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*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

* 2015년 기준 국세 전체 인용률(재조사 제외) 18.3%,
대리인이 없는 사건의 인용률(재조사 제외) 6.5%

② 지원대상

-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 하는 개인으로,
- 법인사업자, 상속세·증여세·종합부동산세·관세·지방세 심판청구 및 세목과 관련없는 심판청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③ 국선심판청구대리인 구성현황

| 지역 | 변호사 | 세무사 | 공인회계사 | 합계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수도권, 강원 | 3 | 2 | 4 | 9 |
| 부산, 경남, 제주도 | 1 | - | - | 1 |
| 대전, 충청 | 1 | - | - | 1 |
| 광주, 전라 | - | 1 | - | 1 |
| 대구, 경북 | - | 1 | - | 1 |
| 합계 | 5 | 4 | 4 | 13 |

4 지원 절차

